관리번호			
	신규	재계약	양수도
계약유형		1차	

# 청년다방 가맹계약서



가맹점명 테스트

# 주식회사 한경기획

본 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열람, 계약체결, 법원제출 등의 용도 외 무단복제 및 제3 자에 대한 유출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년다방 가맹계약서

주식회사 한경기획(이하 가맹본부라 한다)과 가맹점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가맹본부의 청년다방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가맹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본 계약에 의거한 가맹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청년다방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에 관한 전반적 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부상조의 믿음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가맹본부"라 함은 청년다방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청년다방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③ "가맹점운영권"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을 경영하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 ④ "가맹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점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가맹점 개점을 위한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⑤ "영업규정"이라 함은 가맹본부의 청년다방 가맹점 사업운영 시스템을 통일화시켜 상품과 서비스의 표준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본 계약내용에 보충하여 제정한 가맹점경영 및 관리기준을 말한다.
- ⑥ "물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 상품, 기물 등의 일체를 말한다.

####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상호독립성에 기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본 내용을 설명받고 숙지하였습니다.



#### 제4조 (가맹점의 표시)

- ① 본가맹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는 청년다방 가맹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업표지:청년다방
  - 2. 가맹점명:청년다방테스트
  - 3. 가맹점사업자성명:테스트
  - 4. 가맹점소재지:41566대구북구경대로17길47
  - 5. 가맹점 규모:임대면적1000m²/전용면적1000m²(1000평)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전항 각 호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포함)상의 계약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점포(사업장)를 가맹점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이나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등)

- ① 가맹점사업자는 본 가맹계약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본계약서에서 정한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
  - 2.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특허 등을 가맹점운영권과 영업지역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3. 가맹점운영을 위한 경영지도를 받을 권리
  - 4. 제2호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청년다방 가맹사업 내에서만 유효하다.
- ③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을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한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본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본 가맹계약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 1.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포(사업장)를 유지할 것
  - 2. 경쟁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3. 점포에서 가맹사업 이외의 다른 업종이나 사업을 별도로 혹은 추가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것
  - 4.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교육을 수료할 것
  - 5. 본계약내용을 준수하고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시정할 것
  - 6.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나 공급하지 않는 물품을 가맹사업과는 별도의 유통경로(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CVS,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에 공급할 수 있다.
- ⑦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한하여 청년다방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므로 영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청년다방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및 영업표지 불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없는지역에 한하여 인근 가맹점사업자가 청년다방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⑧ 가맹본부는 본 가맹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사사업자를 선정하여 가맹본부의 권리를 일부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지사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리를 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 제6조 (계약 당사자의 독립)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자이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 또는 동업자, 직원, 보조인 등이 아니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청년다방 가맹사업의 운영을 위한 직원,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 시에 고용주로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직원,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관계 및 급여 등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도 이윤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경영과 소비자와의 각종 분쟁 등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세법,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제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는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⑥ 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상관례에 따라 공급 받는 자가 별도 부담한다.



#### 제7조 (서면통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영업규정의 변경 등 기타 가맹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공문 또는 관리사이트 등을 이용해 가맹점사업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제8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체결한 완전한 계약으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호 교환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내용 등을이유로 본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 ③ 본계약의 체결이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합의하에 본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 1.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 2.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제9조 (계약기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기간은 2024년07월08일부터 2025년07월07일까지로 한다.(최초 가맹계약기간은 2년, 갱신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10조(입지)

- 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청년다방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가맹점 입지를 정하였으므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직원에게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본부의 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확인 하며 운영하게 될 가맹점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영업한경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제11조 (영업지역)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설정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1. 일반 점포인 경우 가맹점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영업지역내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이므로 영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 2. 특수상권인 경우 가맹점소재지가 있는 건물을 영업지역으로 한다.(특수상권이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쇼핑센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을 말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전항의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가맹본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배려하여 2개월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다른 점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잔여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다.
-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 ④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사 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가맹점사업자는 지정된 영업지역이 아닌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및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영업지역조정 및 신규가맹점 개설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가맹본부에 있다. 또한, 온라인 판매, 홈쇼핑 등은 영업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권리는 가맹본부에게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배달을 통하여 영업하는 지역은 영업지역보호에서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경쟁 또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 간 상권 분쟁은 가맹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지도록 한다.

#### 제12조 (가맹금)

- ①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을 통해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가맹비 일금일천만원(₩10,000,000)<부가 세별도>을 계약체결일에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가맹비는 계약금 성격의 금전으로 계약 체결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개점 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교육비 일금삼백만원(₩3,000,000)<부가세별도>으로 하고 계약체결일에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교육비는 교육이 시작된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존속 중 발생할 수 있는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 증금 일금삼백만원(₩3,000,000)을 계약체결일에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가맹본 부는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면 계



약의 종료와 그 조치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의무가 이행이 완료됨을 확인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또한, 계약이 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을 개점한 해당 월부터 익월 5일까지 로열티 명목으로 일 금삼십만원(₩300,000)<부가세별도>을 가맹본부가 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개점 전까지 로열티 지급을 위한 CMS자동이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로열티는 소멸성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물가 상승, 기타 한경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로열티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개점 또는 종료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중심의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CRM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 일금삼만원(₩30,000)<부가세별도>을 개점한 해당 월부터 익월 5일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개점 전까지 CRM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료지급을 위한 CMS자동이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CRM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료는 소멸성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물가 상승, 기타 한경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CRM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개점 또는 종료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⑥ 계약기간 내에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 중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의 잔여 계약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 (가맹금의 예치)

- ① 가맹점사업자가 본계약에 의해 청년다방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예치할 가맹금은 제12조 제1항 가맹비, 제2항 교육비, 제3항 계약이행보증금을 말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할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한다.

#### 제14조(인테리어 및 설비 등)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가맹본부가 정한 청년다방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간판, 설비, 기기, 비품, 물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다방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전항의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을 의뢰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주방기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모든 인테리어, 간판, 집기, 사인물, 마케팅물 등의 사용 또는 비치에 있어 가맹본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정하지 않은 간판, 집기, 포스터 등을 가맹점에 설치·부착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간판, 기타 시설, 각종 설비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 등 점포한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가맹본부의 요구로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을 교체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확장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간판 교체비용의 40%를 지원하며, 가맹점을 확장 또는 이전하지 않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간판 교체비용의 20%를 지원한다.
- ⑦ 가맹본부가 전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지원 금액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을 교체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을 교체하는 경우
- 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설계, 시공하는 경우 매뉴얼 제공비(정보제공과 디자인 검수에 대한 비용)로 3.3㎡당 일금삼십만원(\300,000)<부가세별도>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이 경우 가맹본부는 통일성 유지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테리어 및 시설에 대한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POS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 (교육·훈련)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② 교육·훈련과정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으로 나누며 필요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신규교육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직원이 가맹본부가 정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 교육을 받고 이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일정을 사전 통지하고 통지된 내용에 따라 교육일정을 진행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교육비용은 가맹본부가 책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필요 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본부에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 ⑦ 가맹본부의 경영지도에 의한 가맹점 점검 시 규정 미준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직원 포함)에게 보수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매보브ㄹ브터 보내요음 기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본 내용을 설명받고 숙지하였습니다.



#### 제16조 (보험의 가입)

- ① 가맹점사업자는 본계약기간 동안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기에 충분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전항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하여 배상책임이 면책되거나 가맹본부에게 배상책임이 전가되지 아니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이 손해배상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항의 보험 및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여 가맹점사 업자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제17조 (개점승인)

- ① 가맹점사업자는 본계약에 의한 가맹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후 가맹본부로부터 개점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 제18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규정 등을 준수하여 하고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집기, 비품 및 기타 가맹본부가 지정한 물품을 구입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품목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상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하는 물품을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변경된 영업정책(상품, 서비스, 물품 등의 변경)을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동시에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정해진 날부터 변경된 영업정책에 따라서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상품의 소비자가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 서면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한다.
  - 1. 가맹점사업자는 본 가맹사업이 가맹본부의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한 가맹본부의 고유한 경영노하우이자 기업비밀로서 보호한다.
  -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보호하고 이를 준수한다.
  - 3. 가맹점사업자는 취급하는 상품의 품질과 가맹점의 한경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 4. 가맹점사업자는 본계약 내용 및 가맹본부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의 표준화, 통일된 유니폼의 착용,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가맹점 유지를 통해 청년다방 가맹사업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 (영업일 규정)

-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월 26일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개점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복장규정)

- 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직원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1조(물품등의주문 및관리)

- 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가지정한 사업자에게 공급받아야 하며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직접 구입 또는 직접 제조할 수 없다. 또한, 그 내용을 별지에 첨부할 수 있다.
  - 1.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
  - 2. 영업표지가표시된소모품,비품등기타물품
  - 3. 기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공급하기로 정한 물품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에서 규정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집기 및 소모품, 비품, 판촉물 등 기타 물품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접 조달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가맹본부는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을 물품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어 물품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물품을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물품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가맹점 영업 외 다른 방법(인터넷 판매 포함)으로 판매할 수 없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관리를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디자인 및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물품의 하자와 책임범위

① 가맹점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고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맥보브로브터 보내용을 기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본 내용을 설명받고 숙지하였습니다.



-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보관상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공급자에게 책임이 없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을 공급 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물품 공급이 지연 되는 경우
  - 2. 무역마찰이나 가격폭등 등으로 인하여 물품 수입이 지연 되거나 중단된 경우
  - 3. 통상적인 공급량을 초과한 수요로 인한 절품의 경우
  - 4.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 5. 기타 거래관행상 정상적으로 물품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④ 가맹점사업자는 물품을 인수함과 동시에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3조 (대금의 결제)

- ① 가맹점사업자는 물품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가맹본부에 선입금하며 가맹본부는 입금확인 후 물품 등을 공급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 또는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물품 등의 공급 중단)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가맹점사업 자에 대한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본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교육·훈련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가맹점사업자가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감독 및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② 가맹본부는 다음의 경우에 즉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 선입금 후 공급하므로 선입금하지 않은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경우
  -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6.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9조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본 내용을 설명받고 숙지하였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할 미수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 제25조 (경영지도)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자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 1.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가맹본부에 전항의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광고 및 판촉)

- ① 가맹본부는 청년다방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판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활동을 총괄하며 가맹본부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 및 판촉의 소재, 매체, 횟수, 시행일자 등 세부내용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전항에 따라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나 사전 약정을 체결한 경우 광고 및 판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참여할 의무가 있다.
- ③ 가맹본부는 제1항의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분담은 광고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가맹점 모집광고 일 경우 가맹본부가 전액부담하고 브랜드 홍보 및 상품광고인 경우나 가맹점 모집광고와 브랜드 홍보 및 상품 광고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가맹본부 10%, 전체가맹점사업자 90%를 부담한다.
- ④ 가맹본부는 제1항의 판촉을 시행하는 경우, 기획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판촉물 구입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전단·리플렛·카탈로그의 제작비용,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비용 등 판촉행사에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50%씩 분담한다.
- ⑤ 가맹본부는 광고 및 판촉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말한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 2. 해당 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3.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 집행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총액
- ⑦ 전항에 따라 집행내역을 통보받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내



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⑧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광고 및 판촉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⑨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 자는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⑩ 청년다방 가맹사업의 광고 및 판촉활동 등에 사용되는 인쇄물, 기타 제작물은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제3항에서 정한 분담과는 별도로 매월 5일에 일금일십만원(₩100,000)<부가세별도>을 가 맹본부에 광고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개점 전까지 광고비 지급을 위한 CMS자동이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급한 광고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 제27조 (보고의무)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보고서, 회계관련자료, POS자료 등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요구한 기한 내에 작성하여 가맹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전항의 영업보고서와 회계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POS매출 자료를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가맹희망자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28조 (영업비밀유지의무)

- ① 가맹점사업자는 청년다방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와 영업규정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규정 등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제29조 (경업금지의무)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종료 후 6개월 동안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 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존속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여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없다.

#### 제30조(감독 및 시정요구)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년다방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재료관리, 고객관리, 메뉴관리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언제 든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신속히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제31조 (손해배상)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한다.
- ② 본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하는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금은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필수 공급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자점매입한 경우 위약금 일금오백만원(₩5,000,000)
  -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 각 일금오천만원(₩50,000, 000)
  - 3.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 일금이천만원(₩20,000,000) 또는 잔여계약일에 대한 위약금(잔여계약일 × 일금삼만원(₩30,000원))
- ④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금(지체 일수 × 1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⑧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다.

#### 제 32조 (영업의 양도)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양도는 법적인 권리의 양도뿐 아니라 실질적인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의 승인 요청은 가맹점사업자가 처분행위를 하기 2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양도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양수인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현황자료를 양수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⑥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효력이 없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⑦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 계약이 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금전을 지급해야 양수인으로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양수인이 신규가맹계 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계약과 동일한 가맹비를 추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 ⑧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영업지역내에서 본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
- 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경우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가맹본부에 청구할 수 있다.

#### 제33조 (영업의 상속등)

-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 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한다.
- ② 상속인은 본인의 부담으로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청년다방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 제34조 (계약의 갱신)

- ① 본계약을 갱신할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청년다방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⑤ 가맹본부가 제3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 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5조 (계약의 해지)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 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제11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제14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가맹점사업자가 제16조 보험의 가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
  - 7. 가맹점사업자가 제17조 개점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제18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 11.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2.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물품의 하자와 책임범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3. 가맹점사업자가 제23조 대금의 결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4.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5.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6.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 영업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7.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8. 가맹점사업자가 제30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9.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손해배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0.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1. 가맹점사업자가 제33조 영업의 상속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 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③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계약해 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종료 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 여야 한다.

#### 제36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 ①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가맹본부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계약서, 매뉴얼 등)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폐업 사실증명서(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전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본계약의 종료(계약기간 만료, 해지, 양도 등도 포함한다) 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에 본계약과 관련된 투자비용이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다.
- ⑥ 본계약의 종료시 가맹점사업자는 본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본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본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본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 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⑦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37조(분쟁해결)

- ① 본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반 법규 및 건전한 상관례에 따른다.
-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화와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8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9조 (자문)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로부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제공 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전항의 자문을 받은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40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본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가맹금을 지급하는 날 중 빠른 날 14일 전에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 제41조 (특약사항)

특약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서의 각조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하였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상과 같이 본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2024년02월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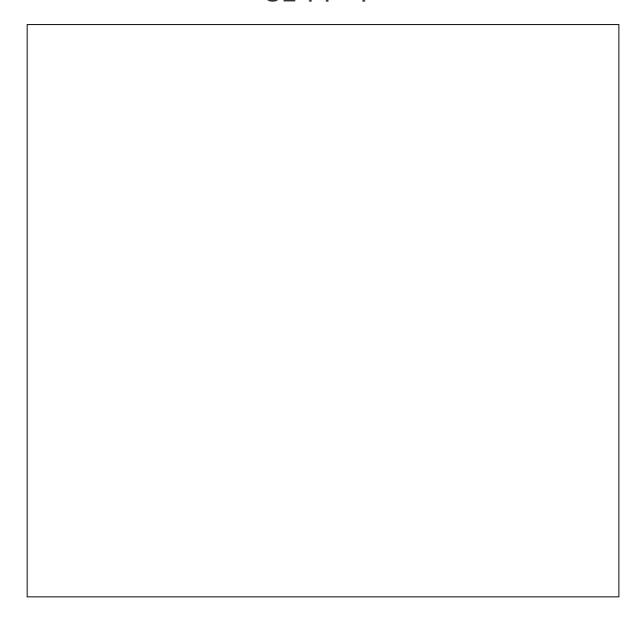
	상호	주식회사한경기획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60,3층(대흥동,스카이빌딩)					
가맹본부	법인등록번호	180111-0731728	대표이사	한경			
	사업자등록번호	621-81-86842	기표이시	FI 60			
	가맹점명	테스트					
	가맹점주소	41566대구북구경대로17길47					
가맹점 사업자	자택주소						
	전화번호	0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년월일	성명	테스트(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본 내용을 설명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별지 1

## 영업지역 표시도



※위영업지역 표시도의 영업지역 내에 있는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쇼핑센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은 영업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수상권을 영업지역으로 설정한 경우 해당 건물만 영업지역이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본 내용을 설명받고 숙지하였습니다.



## 별지 2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을 위해 다음 내역 중 강제 품목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권장 품목은 자율적으로 공급처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공급하는 물품(원·부재료) 내역

물품명	규격및단위	물품사용강제여부	거래상대방강제여부	거래상대방
C1인차돌양지(청년다방용 100g*35입 3.5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1인포장용기(한경용 소_Ø195_5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1인포장용기뚜껑(청년다방용∅195_5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3칸도시락뚜껑(청년다방용 80개*4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3칸도시락몸통(청년다방용 80개*4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간장딥핑소스(청년다방용 20g*100입 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갈릭시즈닝(청년다방용삼조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갈릭시즈닝(한경용 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감자탕뚜껑(청년다방용 50개*4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감자탕용기(청년다방용소_50개*4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고추튀김(청년다방용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그린스위트슈가시럽(청년다방용1.5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김말이튀김(청년다방용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깍둑단무지(청년다방용 3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깐대파(청년다방용5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깐메추리알(청년다방용 맨포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본 내용을 설명받고숙지하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



C깐메추리알(청년디방용불스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깐메추리알(청년다방용새한푸드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냉동감자(청년다방용크링클컷 2.5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냉동감자(청년다방용크링클컷_12mm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냉동밀떡볶이(청년다방용2Kg*3입6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냉동중국당면(청년디방용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농일미니맛(다진김치한경용1.5*1.510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단호박식혜(청년다방용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대파채(청년다방용2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델리돈까스배터믹스(청년다방용5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돈까스소스(청년다방용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돈등심(청년다방용 90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돈부리덮밥소스(한경용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돔뚜껑(청년다방용 92Ø_10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둥근대나무젓가락(청년다방용500개*6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떡볶이소스(청년다방용 매운맛A 10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떡볶이소스(청년다방용순한맛B10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띄어진밀떡볶이(청년다방용4Kg*2입8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리얼등심돈까스(한경용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매운떡볶이소스(청년다방용 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매운떡볶이파우더(청년다방용 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모둠꼬치어묵(청년다방용 23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모짜렐라치즈(청년다방용 2.5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물티슈(한경용 400입 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미니깍둑단무지(청년다방용 130g*80입 10.4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밀떡볶이(청년다방용신천_4Kg*2입 8Kg/BOX)	вох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밀크모짜렐라치즈볼(청년다방용 1.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바질페스토소스(청년다방용 20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베이컨(한경용 300g*3입 90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부산어묵(청년다방용 80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비닐봉투(청년다방용대_10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비닐봉투(청년다방용소_20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빅토리아플레인(청년다방용 350ml*24입 8.4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빅토리아플레인(한경용 500ml*20입 10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삼덕짜장소스(한경용 1.5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상천어묵(청년다방용 80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소차돌양지(청년다방용신우호주_180g*25입4.5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소차돌양지(청년다방용 정석호주_180g*25입 4.5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순살치킨가라아게(청년다방용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스위트칠리소스(청년다방용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스위트콘튀김(청년다방용2.4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스트링치즈(청년디방용 14mm 2.5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식용유(한경용 18L_제이엘 18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아이스컵(청년다방용 32oz_무지_5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아이스컵(한경용 무지_16oz_5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에비카츠(청년다방용 30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열대과일베이스(청년다방용 1.95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옛날떡볶이파우더(청년다방용 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옛맛찰순대(청년다방용25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오뎅소스(한경용 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오징어배터믹스(청년다방용 매운맛5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오징어손질튜브(청년다방용 230g*30입 6.9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오징어슬라이스(청년다방용 900g*10입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원두커피(청년다방용 50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유산지(청년다방용 1000개*5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으뜸야채튀김(청년다방용 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일반홀더(청년다방용 마닐라합지_32oz_800입 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잡채만두(청년다방용 1.5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잡채튀김(청년다방용 1.5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차돌양지(청년다방용신우미국_180g*25입 4.5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찰김말이튀김(청년다방용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청포도베이스(한경용 1.95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칼집통오징어(청년다방용7.5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컵캐리어(청년다방용 25개*8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컵홀더(청년다방용13oz_500입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콘소메시즈닝(청년다방용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쿠킹은박도시락(청년다방용 200*150*35_1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쿨다방(청년다방용복숭아맛_500ml*20입 10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쿨다방(청년다방용 파인애플맛_500ml*20입 10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크리미버터소스(청년다방용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크리미버터소스(청년다방용소포장_80g*50입4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크리미버터소스(청년다방용오에스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크리스피순살치킨(청년다방용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토핑로얄휘핑크림(청년다방용 1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통오징어(청년다방용 7.6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통오징어가라아게(청년다방용 1인용_180g*40입 7.2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통오징어가라아게(한경용 한경_330g*20입 6.6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통통순대(청년다방용 25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튀김봉투(청년다방용 100입 F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튀김봉투(청년다방용소_10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페리에일(청년다방용 330ml*24입 7.92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페파로니(청년다방용 50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평뚜껑(청년다방용 107∅_10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평뚜껑(청년다방용 92Ø_10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플라스틱수저(한경용일회용_무지_줄줄이_10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한경수비드통닭(청년다방용 60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한라봉베이스(한경용 1.8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핫컵(청년다방용 16oz_50입 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해물모둠(청년다방용 600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허니간장소스(청년다방용2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허브덴뿌라튀김용파우더(청년다방용 5Kg/EA)	EA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C혼합야채(청년다방용 당근+양배추+양파 2Kg/BOX)	BOX	강제	강제	CJ프레시웨이(주)
HnGF건월남고추(5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감자(M_100~160g/개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계란(무항생제_대란_52g*30입 1.56Kg/PAC)	PAC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계란(외식용특란무항생제_60g*30입1.8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계란(중란_44g*30입 1.32Kg/PAC)	PAC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고구마(상품 300g이상/개튀김용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깐대파(상품 KG)	KG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깐양파(RS용 150~200g/개 KG)	KG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깐양파(RS용 상품 200g/개중식용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깻잎(쌈채_원물 KG)	KG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깻잎(특품 1속_12장외식용 20g/PAC)	PAC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다원식품분모자(굵은_17mm 25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단호박(상품원물 KG)	KG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덴마크흰우유(1L_클래식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동림수산 날치알(골드 8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동림수산날치알(레드 8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뚜레반미숫가루(12곡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리치스스위트콘(2.95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리치스스위트콘(425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리치스시럽펌프(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립톤아이스티(레몬907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립톤아이스티(복숭아907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마미손고무장갑(빨간색_대L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매일유업흰우유(1L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매일유업 흰우유(1L_멸균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매일유업흰우유(1L_바리스타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메티에 바닐라시럽(700ml_리치 908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면사랑스파게티면(17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면장갑(민무늬_1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무우(상품 KG)	KG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밀크마스터 흰우유(1L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백설 맛소금(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백설 하얀설탕(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비닐컵캐리어(32온스_1구_2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비닐컵캐리어(32온스_2구_2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비트세탁세제(지함_3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사조대림 사각어묵(알뜰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삼조쎌텍프리믹스-H(2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서강유업 서강연유크리밀(5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서울우유 흰우유(1L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세척당근(특품 200~280g/개 KG)	KG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세척무우(상품 KG)	KG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소스뚜껑(70파이*3cm_1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소스용기(70파이*3cm_1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소와나무 흰우유(930ml 93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소이원콩나물(곱슬이_단채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소이원콩나물(곱슬이_단채4Kg/BOX)	ВОХ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소이원 콩나물(장채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소이원콩나물(장채4Kg/BOX)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수월한닭정육(2*5cm_절단2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수월한닭정육(3*3cm_절단2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숙주니물(상품 쌀국수용 4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쉐프원스파게티미트소스(한경용2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스카치브라이트 양면스폰지수세미(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스트로우(개별포장_일자_검정색_7*210mm_500입 PAC)	PAC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스트로우(일자_검정색_6*210mm_5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스트로우(일자_검정색_7*250mm_5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스트로우(자바라_검정색_7*210mm_5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스트로우(자비라_혼합색_7*250mm_5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스티커(위생라벨_1000입범용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스프라이트 사이다(355ml 업소용 355g/EA)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스프라이트사이다(PET_500ml업소용500g/EA)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신동원식품 양념소금(3g*200입 순대소금용 6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신송식품참기름(1.8L 1.8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신영상회 파슬리후레이크(1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신영상회 파슬리후레이크(25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신일식품 빵가루(일식용 2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썬큐베이키드빈스(42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아기표 식소다(15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야무진 식기세척기린스(18L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야무진 식기세척기세제(18L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야무진 오븐크리너(18L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야무진 주방세제(13kg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야무진 치킨양념소스(순한맛 2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양배추(상품겉잎제거 KG)	KG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양배추(외식용특품 3.5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양상추(상품겉잎제거 KG)	KG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에쓰푸드 비프불고기(분쇄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에코삭생칵테일새우(PDTO_26/309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에코프랜드 다용도봉투(검정색_50L_63*82cm_100매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에코프랜드 다용도봉투(흰색_50L_63*82cm_100매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에코프랜드쓰레기봉투(검정색_100L_78*95cm_50매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에코프랜드 쓰레기봉투(흰색_100L_78*95cm_50매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엔젤스노우믹스(한경용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예소담맛김치(슬라이스 볶음밥용 1Kg/BOX)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예소담맛김치(일반_슬라이스 볶음밥용 1Kg/BOX)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예소담맛김치(적숙_일반10Kg/BOX)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오뗄칼집비엔나(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오뚜기마가린(파운드45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오뚜기마요네즈(골드8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오뚜기사리면(개별포장 110g/EA)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오뚜기옥수수마가린(2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오뚜기와사비(튜브_액상1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오뚜기짜장분말(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오뚜기케찹(3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오쉐프흑후추(PET_통 45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움트리흑후추(1등급45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유로골드 냉동감자(크링클컷 2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유산지(무지_L자_210*140mm_5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유한양행락스(2L주방용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랩랩(2호_35cm*500m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랩랩(NEW_1호_30cm*500m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감자샐러드(16년리뉴얼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갓씻은자연담은쌀(20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대두유(18L 16.506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볶음참깨(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쌀(자연담은미 20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조미김가루(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조미김가루(4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주방세제(리뉴얼_그린알로_13kg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주방세제(리뉴얼_그린알로_2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참기름(NEW_PET_1L916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케이준드레싱(NEW_2017리뉴얼2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쿠킹호일(15μm_25cm*30m30입용/BOX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키친타올(150매_2롤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테이블냅킨(실속 NEW_80매*100속 BOX)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튀김가루(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페이퍼타올(실속핸드타올_4500매 BOX)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이츠웰프리미엄통등심돈까스(100g*10입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일회용기(PET_투명_2온스_62파이*30mm_100입소스용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일회용기뚜껑(PET_투명_2온스_62파이*30mm_100입소스용E 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일회용기세트(75파이*60mm_1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일회용기세트(DW-003_240*180*40_4칸_200입도시락용BOX)	ВОХ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재우 숙주나물(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재우 숙주나물(3.5Kg/BOX)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적채(상품 KG)	KG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조인 깐메추리알(무항생제_원란 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지원 일회용기뚜껑(W-3_75mm_1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진로발효분무기(450ml바이오크린콜용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참라면 사리면(덕용 115g/EA)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천일식품 낙지볶음밥(30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천일식품쫄면(2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청양고추(상품 100g/PAC)	PAC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청양식품 참기름(PET_1.8L1.65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치킨무(외식체인전용 5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치킨박스(체인전용크라프트_무지_중_190*110*65mm_200입 B OX)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칠성사이다(355ml 업소용 355g/EA)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칠성사이다(PET_500ml업소용500g/EA)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카페마스터스흰우유(1L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커피스틱(검정색_18cm_1000입 PAC)	PAC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커피클린커피머신세정제(클리너파우더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컵리드(쳥년다방용블랙_핫뚜껑_개폐_1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코다노눈꽃엔젤헤어치즈(모짜렐라80%+체다20%1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코다노 스리라차마요소스(2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코카콜라콜라(355ml업소용 355g/EA)	ВОХ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코카콜라콜라(500ml업소용 500g/EA)	BOX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크레잇 허니머스타드소스(2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크린업부직포행주(삼색_38*38cm_3입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크린업철수세미(30g*2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크린엎롤백(대_35*45cm_500입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크린엎롤백(미니_17*25cm_200입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크린엎롤백(소_25*35cm_500입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크린엎롤백(중_30*40cm_500입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크린엎위생장갑(200매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크린엎위생장갑(실속_500매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크린콜소독제(59%_1L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탑글로브니트릴위생장갑(파란색_소_100입 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햇반즉석밥(210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황등농협서동미(20Kg/EA)	EA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흜대파(상품 KG)	KG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3M 산가측정페이퍼(50입 PAC)	PAC	강제	권장	CJ프레시웨이(주)

- ※ 가맹본부의 경영정책에 따라서 물품명, 규격, 공급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 본계약서에서 공급하는 물품(원·부재료) 등의 내역이 없을 경우, 운영매뉴얼이나 운영규정,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상기 물품 외에도 가맹본부의 Brand 및 Logo가 새겨진 물품(공산품 등)과 가맹본부의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물이나 판촉물은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